

대조원 인

인

## 진 단 서

별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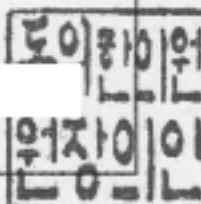
연 번 호 201200017

주민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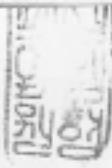
환자의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금호아파트 804-301						
환자의 성명	이해관	성 별	<input checked="" type="radio"/> 여성	생일	1963-04-01	연령	49
병 명	아래허리통증, 오천추부			국제질병분류번호			
임상적 최종				M5457			
발 명 일		진 단 일	2009.9.26				
합 후	상기환자는 상기 질병으로 본 환의원에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임. 검진 기록상 2008년 검사부터 첨경하본 결과 L5-S1 C5-6 요추 및 경추 후간판 탈출증으로 판정되어 있는 상태임.						
치료 의 견	본원의원에서 침 훌 둘리치료 후나 등 각종 치료수단을 동원해 치료한 결과, 호전되는 시기도 있었으나, 과도한 업무와 장시간의 출퇴근 시간에 따른 부담이 환자의 건강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하고, 최근에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악화를 막고 치료를 통해 상태 호전을 시키려면 최소한 2주간의 요양과 치료를 요함.						
비 고		용 도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2012년 10월 15일



- 주 : 1. 본인 확인은 진단 의사가 주민등록증과 대조(미성년자일 때는 기타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 할 수 있다.) 확인하고 날인한다.  
2. 병명은 일상적(인플레션)과 최종진단명을 백일하여 표시한다.  
3. 병명과 국제질병 분류번호를 함께 기입한다.



원부대조필 인

## 진 단 서

등록번호

연번호

환자의성명	이해관	주민등록번호	
환자의주소	(전화 : )		
병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상적추정 <input type="checkbox"/> 최종진단	요 추 영 좌	S3350	
수상연월일	2012년 10월 15일	진단연월일	2012년 10월 17일
치료내용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병명으로 2012년 10월 17일 본원에 내원 가료한바 있으며, 합병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 부터 약 02(0) 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용도	직장제출용		
비고	단, 추후 경과에 따라 병명 및 진단기간 변동될 수 있음.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환자의 민족사항은 진찰한 의사가 주민등록증,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공립대학 학생증, 군무원증, 의료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질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빼밀하여 에 체크 표시를 하고, 질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으며,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를 기입합니다.

# 추 가 진 단 서

본주 대소변 진

등록번호

연번호

환자의성명	이해관	주민등록번호	
환자의주소	(전화 : )		
병명			S335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상적추정 <input type="checkbox"/> 최종진단	요 추 엄 좌		
수상 연월일	2012년 10월 15일	진단 연월일	2012년 10월 17일
치료 내용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병명으로 2012년 10월 17일 본원에 내원 가료중에 있으며, 호전은 있으나 지속적 통증호소 하고 있어 초진진단 만료일(2012. 10.28)로 부터 약 02(이)주간의 추가 안정 및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용도	직장제출용		
비고	단, 추후 경과에 따라 병명 및 진단기간 변동될 수 있음.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발행일: 2012년 10월 29일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서명 또는 인)